**화물운송 계약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IPS”라 칭함)과 «거래처(을)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거래처(을)명» (이하 “을”)는«계약일자» 다음과 같이 화물운송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운송”이라 함은 “을”이 “IPS”가 지정하는 화물 일체를 특정 장소 또는 지역으로 자신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IPS”와 합의한 시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 행위를 말한다.
2. 본 계약서에 “화물”이라 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관련 부품 및 부산물, 서류기타 “IPS”가 본 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운송을 요청하는 일체의 유형적 물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IPS”가 구두로 지정하거나 또는 “IPS”의 지정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다.

**제2조 【운송의 위임】**

1. “IPS”는 “을”에게 “IPS”가 제공한 특정 서류의 전달 또는 구두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2. “을”이 “IPS”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운송 및 부대 작업의 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을”은 당해 화물의 내용, 시간, 도착지 등을 구분하여 운송 수단을 배차할 수 있고, “IPS”가 지정한 시간과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운송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IPS” 또는 “IPS”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 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2. “을”은 “IPS” 또는 “IPS”가 지정하는 자의 지시 없이 화물의 적재 운송, 목적지의 임의 변경 또는 운송 시간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IPS”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IP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IPS”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제3자에 재의뢰할 수 없으며, “IPS”의 동의 하에 재의뢰 하는 경우도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을”은 항시 차량, 기타 운송 수단을 정비하여 “IPS”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상차 완료 지점으로부터 약정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우천, 강설 등 기후조건에 관계 없이 운송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게차 및 여타 시설을 준비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 수송하여야 한다. 단, 폭우 등 기상조건에 의한 운송 불가능 여부는 상호 협의 후 “IPS”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다.
6. “을”은 지정된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목적지 도착 후에는 “IPS” 또는 “IPS”가 지정한 자에게 화물 인수증과 교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IPS”는 “을”이 운송한 화물의 파손, 하자 등의 여부를 인수증 교부 前(전) 확인하여야 하며, 파손,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당해 하자가 운송상의 과실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을”은 당해 하자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을”은 각 공장 기타 장소로 적송되는 수종의 화물을 합적하였을 경우 목적지에서 소형차에 이적, 신속하게 이송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이행의무】**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운송 및 부대작업에 관하여 “IPS” 또는 “IPS”가 지정한 자의 제반 지시와 감독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운송 경로 선택과 작업 방법은 화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IPS”와 “을”이 협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또한 “을”은 위임 받은 화물 일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다. 만약 “IPS”가 화물의 특성 또는 품질에 관하여 사전 통지 후 그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PS”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3. “을”은 “IPS”의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진행 상황 및 경과 보고를 수시로 제공하거나, “IPS”의 요청이 있는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급박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IPS”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전술한 통지 및 협의가 “을”의 면책을 의미하지는 아니 한다.
4. 본 조의 보고, 연락의 결여 및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5조 【기타 운송 수단의 이용】**

“을”은 1일 출고량이 소량이거나 차량 부족 기타 사유로 배차가 불가능한 경우 “IPS”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운송 수단으로 위탁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된 운송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운송료 및 기타 경비】**

1. 본 위탁 업무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운송료는 “을”이 “IPS”에게 제공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일정한 요율표를 확정하고, 해당 요율표를 기준으로 매월 위탁된 화물의 총 운송료를 “IPS”의 대금 지급 수단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을”은 “IPS”에게 전항의 운송료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IPS”와의 합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창고료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든 운송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단, “IPS”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 【제반 경비의 대불】**

1. “을”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IPS”를 위하여 제반 경비를 대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계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을”은 “IPS”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IPS”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반 경비의 내역을 “IPS”가 검수한 결과, 오류 또는 過誤(과오) 지급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IPS”는 해당 오류 등에 대한 사유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즉시 해당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반 경비가 過誤(과오) 지급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IPS”는 본 경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운송료의 청구 및 지불】**

1. 본 계약에 따른 운송료 및 제반 비용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증빙 서류(계산서, 인보이스 및 기타 입증서류 등)를 첨부하여 “IPS”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단, 세금 및 통관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방법으로 청구한다.
2.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우, 매월 “IPS”의 마감 기준일에 청구
3. 일시적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우, 화물의 목적지 도착일(최종 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확인서를 교부 받은 시점) 기준으로 청구
4. “IPS”는 “을”로부터 청구된 내역, 계산서 및 증빙 서류를 “IPS”가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 또는 過誤(과오) 지급 청구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청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이 제공한 계좌정보로 현금 결제를 진행한다. 만약 “IPS”의 대금 지급 이후 “을”의 지급 청구의 내용 중 과오 지급된 부분이 확인된 경우, “IPS”는 차월 비용 지급 시 과오 지급된 금액만큼 상계하거나 기 지급된 과오지급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을”이 본조에 따른 해당 기일에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의 계산서, 청구서 또는 증빙 서류를 “IPS”에게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을”의 과실에 의해 잘못된 청구서가 발행되는 경우, “을”은 해당 월의 청구서를 이월하여 다음 청구서 제출 기일에 함께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일시적 운송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IPS”는 당해 계산서, 청구서 등의 서류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대금지급 기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IPS”는 운송비 지급 지연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을” 또는 본 계약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IPS”가 승인한 “을”의 사용인은 자신의 고의, 업무상의 과실(경과실을 포함한다) 기타 귀책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손상시키거나 화재, 도난 또는 화물 부족분 발생 등으로 인해 “IPS”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술한 배상을 지체할 경우 “IPS”는 별도의 통지 없이 대금 지급 기일에 “을”이 “IPS”에 가지는 운송료 채권과 상계하여 잔여 운송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만약, “IPS”의 손해배상채권이 운송료채권보다 그 금액이 상위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본 조의 손해배상은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IPS”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운송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했을 경우,
3. ‘을’이 ‘IPS’에게 중대한 손해나 위해를 끼친 경우
4.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5. ‘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7.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IPS’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8. 그 이외에 어느 일방의 계약 불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으로 수출입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해지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한다.
9.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양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일체의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파일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반환에 관한 서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증권의 교부】**

“을”은 화물 운송을 의뢰 받은 즉시 자기의 비용으로 “IPS”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물에 손해보험을 담보하고 同(동) 보험증권을 “IPS”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보험의 범위,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사실 및 본 계약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습득하게는 되는 모든 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 KNOW-HOW 등)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계약 이행의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하여서도 안 된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IPS”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저당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을”이 타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을”의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박탈된다.

**제 13조 【계약의 변경】**

1. 계약 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IPS”와 “을”이 상호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IPS”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운영 방식이나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기간 중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변경된 내용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00년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양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15조 【해 석】**

본 계약의 규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양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며,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행하는 경우 “IPS”와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IPS”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제 17조 【기타】**

1. “IPS”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히 추가 약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별도 약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 각 조항 이외의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대체하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본 계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IPS”와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IPS)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청호리 332-1)

상 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변 정 우 «서명(갑)»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대표자(을)명» «서명(을)»